

대학원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(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모두를 통칭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·명칭변경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 5. 14)
2. 총 입학정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 5. 14)
3. 학위수여요건 변경 및 명예박사학위수여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 5. 14)
4. 석사·박사·명예박사 학위취소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 5. 14)
5.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·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(개정 2019. 5. 14)
6. 교수 및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(신설 2019. 5. 14, 개정 2024. 1. 31)
7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(신설 2019. 5. 14)

② (삭제 2019. 5. 14)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당연직 : 각 단과대학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
2. 당연직 : 각 전문대학원장, 각 특수대학원장
3. 임명직 :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 자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각 전문대학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의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.

제7조 (회의록) 회의록은 대학원교학팀에서 보관하며, 차기 회의 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대학원교학팀에서 관장한다.

제9조 (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) ① 대학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(이하 “통합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(개정 2019. 5. 14)

② 통합운영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주요안건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 5. 14)

③ 통합운영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운영절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9. 5. 14)

제10조(각 대학원 운영위원회) ① 각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(신설 2019. 5. 14)

② 운영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.(신설 2019. 5. 14)

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원의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, 이 규정에 위

반하여서는 아니된다.(신설 2019. 5. 14)

제11조(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) 호서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진 학생은 학생준칙의 징계 구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수료자의 경우 학위청구 논문 제출 및 논문대체학기 자격을 1년간 박탈한다.

[본조 신설 2024. 1. 31]

부 칙 (2017. 6. 20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각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이전의 각 대학원 학칙에 명시한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로 본다. 다만, 일반대학원학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이 규정에 위배되는 각 대학원의 규정(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을 포함한다) 및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개정하고,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9. 5. 14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 1. 31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